

## 우리나라 PL 사고에 대한 법원 판례

### 아파트 배관 파이프 파열에 관한 사건

인천지방법원 2000년 9월 8일 판결 선고

#### 가. 사건개요

원고갑은 W사가 시공하여 1994.9.2 준공검사를 마친 인천 연수구 연수동 W아파트를 양수받아 같은 해 11월경부터 가족과 함께 입주·사용하여 오던 중 1998.2.2이 사건 아파트 내부의 싱크대 아래쪽에 설치된 난방 분배기에서 온수가 누출됨을 발견하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자인 피고 C관리회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C관리회사의 관리계장으로 근무하던 을은 같은 날 누수현상을 확인한 결과, 난방분배기 중 코크밸브와 연결된 배관파이프가 짧게 설치되는 결함으로 동절기를 맞이하면서 뜨거운 물이 이를 통과할 때 그 배관파이프가 수압에 의하여 약간씩 팽창하고, 그 길이가 미치지 못하여 온수가 옆으로 새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우선 온수밸브를 잠근 다음, 같은 달 3일 위 배관파이프를 절단하고 자신이 구입한 새로운 배관파이프를 절단부위에 맞추어 이음쇠(커플링, coupling)를 사용하여 코크밸브와 연결하는 보수작업을 하였다.

같은 해 3 7 05:00경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 내의 방에서 모두 잠든 사이에 위와 같이 보수된 배관파이프의 연결부위가 수압에 견디지 못하고 팽음과 함께 터져 코크밸브로부터 분리된 배관파이프로부터 약 76℃ 상당의 뜨거운 물이 쏟아져 나왔고, 이에 놀라 잠에서 깬 원고병이 방에서 거실 쪽으로 나오다가 이미 흘러나온 온수에 미끄러져 바닥에 쓰러지면서 그의 신체에 온수가 쏟아져 우측 상완, 전완, 좌측 허벅지부터 발등까

지 2도의 다발성화상을 입게 되었고, 또한 온수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내부 및 가구 등이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다.(원고갑은 원고 병의 아버지이고, 원고정은 어머니이다)

한편 1997.3.8W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1998.2.25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다.

위 W아파트 단지 내에는 이 사건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배관파이프에 결함이 있는 세대가 소수 있었는데 W사로서는 입주자로부터 그에 대한 하자보수를 요구받은 경우 곧바로 이를 직접 보수하여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온수누출사고가 발생한 예가 없는 반면, 원고들은 W사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전에 위 누수현상을 알리거나 그에 대한 하자보수를 요구한 바는 없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W사가 사고부위를 보수한 결과 이 사건 아파트에도 더 이상 배관파이프의 결함으로 인한 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 ◀C관리회사의 관리인무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사건 아파트의 시공과정에서 위 난방분배기의 코크밸브와 연결된 배관파이프의 길이가 너무 짧게 설치되거나 그 강도가 낮은 부적절한 재질을 사용하여 공사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된 것이므로 W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자로서 그 공작물인 배관파이프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 또는 제조물인 배관파이프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W사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과정에서 난방분배기의 코크밸브와 연결된 배관파이프의 길이를 짧게 설치한 건축상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결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는 W사가 설치한 배관파이프에서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니라 C관리회사의 직원이 W사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배관파이프의 길이를 늘리는 보수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발생한 사고라고 할 것이므로 W사의 건축상의 잘못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C관리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한편, C관리회사의 피용자인 을로서는 위와 같이 관리대상 아파트의 건축상 결함을 보수하기 위하여 배관파이프를 잘라내고 이음쇠로 배관파이프를 연결할 경우, 코크밸브와 배관파이프의 연결부위 및 이음쇠부분을 철저히 조여 강한 수압에 의하여도 그 부분이 분리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온수가 누출되어 그 위험성을 인식하여 위 밸브를 잠그고 그 다음날 보수를 하던 을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가 17층에 위치하여 온수를 공급받는데 있어 그 수압이 강할 것이라는 점, 만약 온수가 누출되어 사람이나 물건에 닿으면 화상을 입거나 손괴된다는 점 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연결부분을 느슨하게 조이거나 부적절하게 배관파이프를 연결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C관리회사는 을의 사용자로서 그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책임의 제한

한편, 위에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갑과 정은 원고 병의 부모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4세의 원고 병이 위 사고 장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호·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대로 방치하여 위와 같이 화상을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원고측의 과실은 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로써 C관리회사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C관리회사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비율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2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나. 결론

C관리회사는 원고 갑에게 금 6,644,000원(재산상 손해금 6,144,000원 + 위자료금 500,000원) 원고 병에게 금 8,004,247원(재산상 손해금 7,004,247원 + 위자료금 1,000,000원) 원고 정에게 금 500,000원(위자료) 및 각 위 금원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1998.3.8부터 C관리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0.9.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C관리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C관리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C관리회사의 관리인 무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 중 C관리회사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C관리회사에 대한 패소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C관리회사에게 위 각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C관리회사 관리인 무에 대한 항소 및 C관리회사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6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원심판결의 피고 C관리회사에 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C관리회사는 원고 갑에게 금 ₩6,644,000원, 원고 병에게 금 ₩8,004,247원, 원고 정에게 금 ₩500,000원 지급, 원고들의 피고 C관리회사의 관리인 무에 대한 항소 및 피고 C관리회사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장난감 주사기 결함 사건

대판 1979. 12. 26 79다1772

### 가. 사건 개요

만 6세의 어린이가 문방구점에서 구입한 교재용 주사기를 가지고 놀다가 주사기의 바늘구멍이 막히자 주사기를 왼쪽 눈앞에 들이대고 주사기를 압축하는 순간 공기압력에 의하여 '펑' 하고 바늘이 튕겨 나와 왼쪽눈이 좌안동공폐쇄증에 걸린 사건이다. 이에 원고가 주사기 제조업자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나. 판결 내용

대법원은 “주사침을 주사기 몸통에 부착시키는 합성수지 부분이 견고하지 못하고 영성하여 이를 몸통에 부착시켜 공기를 압축할 때는 경우에 따라 주사침 부분이 쉽게 주사기 몸통에서 빠져 나올 수 있게 된 것은 제조상의 결함으로 볼 수 있으며, 제조자가 결함이 없는 제품을 만들어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무에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고 하고, “이 건 제품의 관계검사소에서 하자가 없다는 판정을 받은 것만으로 피고에게 위와 같은 과실이 있었음을 변복할 자료는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여 제조업자의 과실을 인정하였다.

### 다. 시사점

공산품 품질관리법 등 일정한 형식이나 검사에 합격하였다 하여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유무의 판단을 구체적 사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안전기준은 제조물의 제조·판매에 있어서 충족할 만한 최저기준을 규정한 단속규정으로써 민사책임인 제조물책임과는 제도적인 취지가 다르다.

따라서 안전기준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민사책임의 결함판정에 있어서 최종적인 결정수단이 될 수는 없다. 

